

#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직원 인사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학교법인 분진학원(분진중, 강원관광대학) 교직원 인사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법인분진학원 정관에 준하여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및 특별한 다른 규정에 정해진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교직원구분) ① “교원”이라 함은 중학교의 교사 및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말하며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및 기술직 기능직 및 기타 계약직을 말한다.

제 5 조 (겸직금지) 교직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을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3.1)

## 제 2 장 교 원

제 6 조 (자격) ① 중학교 교원은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자 및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의 전공과목과 같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학기 당 발령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1)

제 7 조 (신규임용) ①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교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제6조의 자격자로 하되 박사학위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교수이상의 신규 임용은 제외한다.

③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해 재임용 할 수 있다.

④ 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3.1)

제 7 조의 2 (특별채용) ①본 대학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 8 조 (채용방법) ① 중학교, 대학교원은 정관 제 45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

제 9 조 (임용시기) 교직원의 임용시기는 매년 학기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및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임용기간) 대학교원의 임기는 정관 제 45조 제 2항에 의한다. (개정 2010.3.1)

①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 승진, 전직,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용기간중 병역복무,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 11 조 (연구실적물의 범위)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신규 또는 승진, 재임용 임명할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① 논문은 대학 또는 교수자격을 인정받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저서(출판물에 한함)

2. 학회지

3. 논문집

4. 정기간행물(학술 및 전문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

5.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말한다.

제 12 조 (연구실적물의 인정) ① 저서 중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②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예·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3.1)

⑤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실적물 심사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3.1)

⑥ 학술진흥법 관련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도 논문으로 인정한다.

⑦ 전공분야의 교수활동과 관련된 현장 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특허취득 등 공인된 연구실적으로서의 가치가 인정 될 경우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연구실적심사) ① 대학의 전공분야 교원 3인을 심사요원으로 위촉하되 그 중 2인을 타 대학 소속의 교원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

③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④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인정
2. 2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	70% 인정
3. 3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	50% 인정
4. 4인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	30% 인정
5. 석사학위 취득 논문	100% 인정
6. 박사학위 취득논문	200% 인정

단,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는 학위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간주한다.

⑤ 연구실적심사 평점기준은 A(4점),B(3점),C(2점),D(1점),로 하며, 연구실적 심사평점은 각 편 평균 "B(3점)"이상이어야 한다.

⑥ 예·체능계 실기(연기,발표,전시,창작,출품,입상 등)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며, 평점1점은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다만, 승진임용시에는 당해 직명에서의 연구실적이어야 한다.

⑦ 연구실적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 2 (교수업적평가) 교수임용,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교수업적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등의 교수업적에 대한 평가로 이에 관한 세부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따로 둔다.

제14조 (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직급별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직 급	승진 최저소요연수	승진되는 직위
전임강사	3 년	조 교 수
조 교 수	4 년	부 교 수
부 교 수	6 년	교 수

② 교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현 직급에서 200%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미달자는 승진대상에서 당연히 탈락한다.

③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 계산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은 제외한다.

제 15 조 (승진의 요건) ①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따른다.

제 15조의 2 (승진임용 제한) 해외유학 및 해외연수 등으로 휴직중인 전임교원은 복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승진임용 제청할 수 있다.

제 16 조 (평가위원)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따른 교수업적평가위원은 총장, 교학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

제 17 조 (승진의 시기) 대학 교원 승진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제 18 조 (삭제)

제 19 조 (재임용) 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과 교수업적자료에 의해 우리대학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현 직급에서 200%이상의 연구실적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미달자는 재임용대상에서 당연히 탈락한다.

제 19조의 2 (재임용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정관 제45조 2항의 규정한 임용기간 외에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재임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3.1)

② 심사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19조의 3 (재임용기간) ① 교원은 다음과 같이 직명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교수 : 10년
3. 조교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5. 조교 : 1년

제 19조의 4 (재임용시기) 재임용시기는 매년 3월1일, 9월1일로 한다.

제 19조의 5 (재임용여부통보 및 이의신청)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에 제청하며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그 사실을 임용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3.1)

② 재임용 여부의 심사결과에 의해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① 교원 인사위원회는 교학처장, 기획처장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0.3.1)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54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3.1)

제 20조의 2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신규임용,승진,재임용 및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진술, 기재증명, 채점 또는 보고를 허위로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을 때에는 승진, 임용 및 기타 인사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 3 장 사무직원

제 22 장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23 조 (신규채용) ① 일반직원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 또는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경력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급을 정한다.

② 일반직원은 9급 1호봉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난이성, 책임정도에 따라 상위 직급에 임명 할 수 있다.

제 24 조 (일반직원 구분) ① 일반직원은 기술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군, 직계별로 분류되는 직원을 말한다.

② 기능직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직원을 말한다.

③ 고용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 25 조 (일반직 및 기능직의 계급구분) ① 일반직은 이를 4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능직은 7등급 내지 10등급으로 구분한다.

제 26 조 (승진시기) 일반직원의 승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1일, 9월1일에 실시 한다.<개정 08.9.27>

제 27 조 (승진방법 및 소요년수) ①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점,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상위직 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6급 이하 일반직원의 승진임용은 직급별 최저 근무년수를 아래와 같이 소요해야 한다.

1. 일반직 및 기술직

직 급 별	소요년수	비 고
9급 - 8급	2 년	
8급 - 7급	3 년	
7급 - 6급	4 년	
6급 - 5급	5 년	

2. 기능직

직 급 별	소요년수	비 고
10급 - 9급	3 년	
9급 - 8급	4 년	
8급 - 7급	5 년	

② 전 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 및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28 조 (우수직원의 특별승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 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1. 성실과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일반직원 귀감이 된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

제 29 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사무직원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 30 조 (휴직자,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시 근무자를 보충 할 수 있다.

제 31 조 (훈련) ①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관할청에서 실시하는 사무직원 연수
2. 교육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

- ② 각급 감독직에 있는 직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지속적인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 ③ 훈련성적은 인사 관리 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 32 조 (강임) 임용권자는 직제 또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감등되어 과원이 된 때는 소속 사무직원을 강임 할 수 있다.

제 33 조 (당연퇴직) 일반직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당연 퇴직한다.

제 34 조 (직권면직) ① 일반직원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 3.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4.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품위 불량한 자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5 조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각급 학교 사무직원을 법인 내에서 전직, 전보 발령 할 수 있으며, 교류를 통한 사무능력 및 기능 업무에 능률을 꾀



하여야 한다.

② 대학 내 인사이동은 행정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0.3.1)

제 37 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 1항에 준하여 65세로 한다. 단, 학교장,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3.1)

② 교원은 정년이 달한 날에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일반직은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일반직의 정년은 국가 공무원법 제 74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일반직 60 세
2. 6급 이하 일반직 57 세
3. 기능직, 고용원 55 세

제 38 조 (경력환산)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경력환산율을 준용하되 조교 경력은 연금불입자는 100%, 그 외는 50%를 적용한다.

제 39 조 (정원)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분진 중, 강원관광대학, 법인에 두는 일반직의 정원은 정관 별표 1, 2, 3과 같다.

제 40 조 (임시임용과 계약임용) ① 각급 기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에서는 직원 정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직종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임용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각급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자격, 임용, 복무는 각각 정관 제 90조, 91조, 92조를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0.3.1)

⑤ 임시임용 및 계약 임용 채용 계약서는 별지에 따르도록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교직원인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의 교직원인사는 이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단, 개정규정 중 제14조(승진소요년수)의 적용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